

신구조문대비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교재 페이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11호, 2019. 8. 20.,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60호, 2021. 4. 13., 일부개정] ▶시행 2021.10.14
493	<p>제6조(각급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p> <p>② 지방의 수난구조협력기관 및 수난구조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에 각각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p>	<p>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495	<p>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509	<p>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생략)</p> <p>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④ ~ ⑥ (생략)</p>	<p>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현행과 같음)</p> <p>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난구조활동 참여 소요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511	<p>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p>	<p>제30조의5(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p>

	<p>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신 설></p>	<p>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도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p>
512	<p>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 4.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생략) ②·③ (생략)</p>	<p>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521	<p><신 설></p>	<p>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p>
교재 페이지	<p>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p>	<p>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26호, 2021. 10. 5., 일부개정] ▶시행 2021.10.14</p>
490	<p>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p> <p>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 2. (생략)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업무(이하 “해상수난구조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4. 해상수난구조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 8. (생략) 9. 그 밖에 해상수난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⑤ (생략)</p>	<p>제4조(중앙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 3. 해수면에서의 수난구조업무(이하 “해양수난구조업무”라 한다)에 관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4.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 5.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해양수난구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p> <p>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제5조(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491	<p>1. ~ 5. (생략)</p> <p>6. 해상수난구조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운영</p> <p>7.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해양수난구조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운영</p> <p>7. (현행과 같음)</p>
493	<p>제6조(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분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p> <p>③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소방청·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해상구난(海上救難) 또는 선박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p> <p>나. 민간해양구조대원</p> <p>다. 수난구조,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생략)</p>	<p>제6조(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중앙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분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중앙조정관이 된다.</p> <p>③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질병관리청·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이나 민간해양구조대원</p> <p>나. 다음의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1) 선박 구조 및 설계 분야 2) 해상화물 분야 3) 해양기상 분야 4) 수중구조 및 구난 분야 5) 화재 분야 6) 감식(鑑識) 분야 7) 해상교통 분야 8) 의학, 법학, 심리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수난구조 관련 학문 분야 9) 그 밖에 수난구조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분야</p> <p><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494	<p>제7조(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p> <p>② 광역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이하 “광역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p>	<p>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p>

<p>494</p>	<p>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신 설></p> <p>③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역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민간구조대의 임직원, 선박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494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신 설></p>	<p>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민간해양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p> <p>⑤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493</p>	<p>제8조(중앙대책위원회의 기능) 중앙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해상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p>	<p>제8조(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해양수난구호업무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이하 “수난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p>

<p>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p> <p>3. 해상수난구조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p> <p>4.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와의 업무 협조</p> <p>5. 해수면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p> <p>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p> <p>7. 해상수난구조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 피난업무에 관한 사항</p> <p>8. 해상수난구조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p> <p>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p> <p>10.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1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해상수난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p> <p>3. 해양수난구조업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p> <p>4.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p> <p>5. 광역기술위원회 및 지역기술위원회(이하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 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p> <p>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p> <p>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및 외국구조대에 대한 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p> <p>8. 해양수난구조업무 관할해역의 조정 및 선박의 긴급 피난업무에 관한 사항</p> <p>9. 해양수난구조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p> <p>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구조대의 해외파견</p> <p>1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나 보상금액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12.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의 공동구조에 관한 구조기관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p> <p>13. 그 밖에 해양수난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중앙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p>
<p>494 제9조(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의 기능)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시행의 조정</p> <p>2. 해상수난구조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p> <p>3. 해상수난구조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p> <p>4. 민간 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p> <p>5. 해수면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p> <p>6. 그 밖에 해상수난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9조(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①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수난대비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시행의 조정</p> <p>2. 해양수난구조업무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조</p> <p>3. 해양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 범위·방법·기간, 자원 동원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p> <p>4. 해양수난구조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p> <p>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나 민간 해양구조대와의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p> <p>6. 해양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p> <p>7. 그 밖에 해양수난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p>

		②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다.
49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대책위원회,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와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며, 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95	제11조(대책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95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95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상수난구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95	④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상수난구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계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95	⑤ 광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95	⑥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에 부처진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기술위원회의 회의(제4항에 따른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광역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95	<신 설>	⑦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에 부처진 안건

		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락관 등 관계 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95	<신 설>	제12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앙기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광역기술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기술위원회”는 각각 “광역기술위원회”로 본다.
495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 구조 활동을 위하여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운영 <단서 신설> 2.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편성·운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양경찰구조대: 조난사고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수색 구조 활동을 위해 두는 구조대로서 해양경찰서마다 1개 이상 편성·운영 다만,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또는 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양경찰구조대를 편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503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2조(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진입허가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503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생략)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구조대의 해외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교재 페이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43호, 2020. 11. 12.,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98호, 2021. 10. 8.,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502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

	<p>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p>509</p>	<p>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p> <p>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수난구호민간인의 경우는 제1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p> <p>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수난구호참여자의 경우는 제1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515</p>	<p>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상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사용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5조(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사용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17</p>	<p>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을 말한다.</p>	<p>제17조(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p> <p>9. "신고기관"이란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및 해양경찰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신고소를 말한다.</p>
<p>519</p>	<p>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p> <p>2. 그 밖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8조(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p> <p>2.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p>